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도시개발사업

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

2018. 8

사천아이씨도시개발 주식회사

목 차

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····· 1

1.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····· 2

1.2 계획의 개요 ····· 2

제 2 장 대상지역 설정 ····· 7

제 3 장 평가 항목 · 범위 · 방법의 설정 ····· 11

제 4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····· 14

제 5 장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심의내용 ····· 16

5.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개요 ····· 17

5.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····· 17

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

1.1 계획의 배경 및 목적

1.2 계획의 개요

제1장 사업의 목적 및 개요

1.1 사업의 배경 및 목적

○ 서부경남권 거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

○ 상업·물류·유통기능이 복합된 새로운 유통상업단지 개발 패러다임 제시

○ 고속도로IC 이적지를 활용한 사천시 관문지역 정비

○ 서부경남권 거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

1.2 사업의 개요

1.2.1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○ 본 사업은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22조제1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,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과 관련하여 시행령 [별표 3]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, 협의 요청시기는 다음과 같다.

<표 1.1-1>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구 분	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	협의 요청시기
「환경영향평가법」	1. 도시의 개발사업 가.「도시개발법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	「도시개발법」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8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승인 전
사업지구	○ 면적 : 262,000㎡	○ 사업계획의 승인 전

나. 평가항목·범위 등의 결정 및 결정내용 공개 근거

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4조(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)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 항목·범위 등을 결정

○ 결정된 평가·항목범위에 대하여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제33조(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)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

<표 1.2.1-2> 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 및 결정내용 공개 근거

「환경영향평가법」	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
제24조(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)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(이하 이 장에서 "환경영향평가항목등"이라 한다)을 결정하여야 한다. 1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.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 ⑦ 승인기관장등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	**제33조(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)**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,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. ② 승인기관장등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2.2 사업내용

○ 본 사업의 사업명, 위치, 면적 등의 개요는 <표 1.2.2-1>과 같다.

<표 1.2.2-1> 사업의 개요

사 업 명	○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
위 치	○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87번지 일원 (<그림 1.2-1> 참조)
계획면적	○ 사업지구 : 262,000㎡ ○ 지구외 사업(<그림 1.2-5> 참조) - 지방도1002호선 : B=10~30.5m, L=666m - 소로1-B호선 : B=10m, L=28m - 진입도로 : B=14.5~19m, L=467m
사업시행자	○ 사천아이씨도시개발 주식회사
승인기관	○ 경상남도
사업기간	○ 2016년 ~ 2019년
사업추진방법	○ 「도시개발법」에 의한 도시개발사업(수용 또는 사용방식)
사 업 비	○ 105,249백만원
도시관리계획 현황	○ 자연녹지지역, 생산녹지지역, 계획관리지역

<그림 1.2.2-1> 사업지구 위치도

나. 토지이용계획

○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는 도시개발사업 목적인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임을 고려하고,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2에 따라 상업용지와 도시기반시설용지로 구분

○ 도시기반시설용지는 유통상업단지 운용 및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 계획

○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(2018.1) 및 금회 환경영향평가시(2018.7) 토지이용계획의 변경내용은 총 면적이 34㎡ 감소, 상업용지가 13,573㎡ 감소하였고 기반시설용지가 13,539㎡ 증가하였으며, 공원이 3,215㎡, 녹지가 5,215㎡가 각각 증가하였다.

<표 1.2.2-2> 토지이용계획

구 분		면 적 (㎡)		구성비(%)	면적증감 (㎡)
		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 (2018.1)	금회 환경영향평가시 (2018.7)		
합 계		262,034	262,000	100.0	감) 34
상업용지	소 계	178,385	164,812	62.9	감) 13,573
	유통상업	51,360	49,680	19.0	감) 1,680
	일반상업	127,025	115,132	43.9	감) 11,893
도시기반시설용지	소 계	83,649	97,188	37.1	증) 13,539
	주 차 장	4,691	5,241	2.0	증) 550
	공공공지	-	416	0.2	증) 416
	공 원	4,890	8,105	3.1	증) 3,215
	녹 지	17,156	22,371	8.5	증) 5,215
	저 류 지	4,343	5,392	2.1	증) 1,049
	하수처리장	2,520	-	-	감) 2,520
	보행자도로	108	290	0.1	증) 182
	도 로	49,941	55,373	21.1	증) 5,43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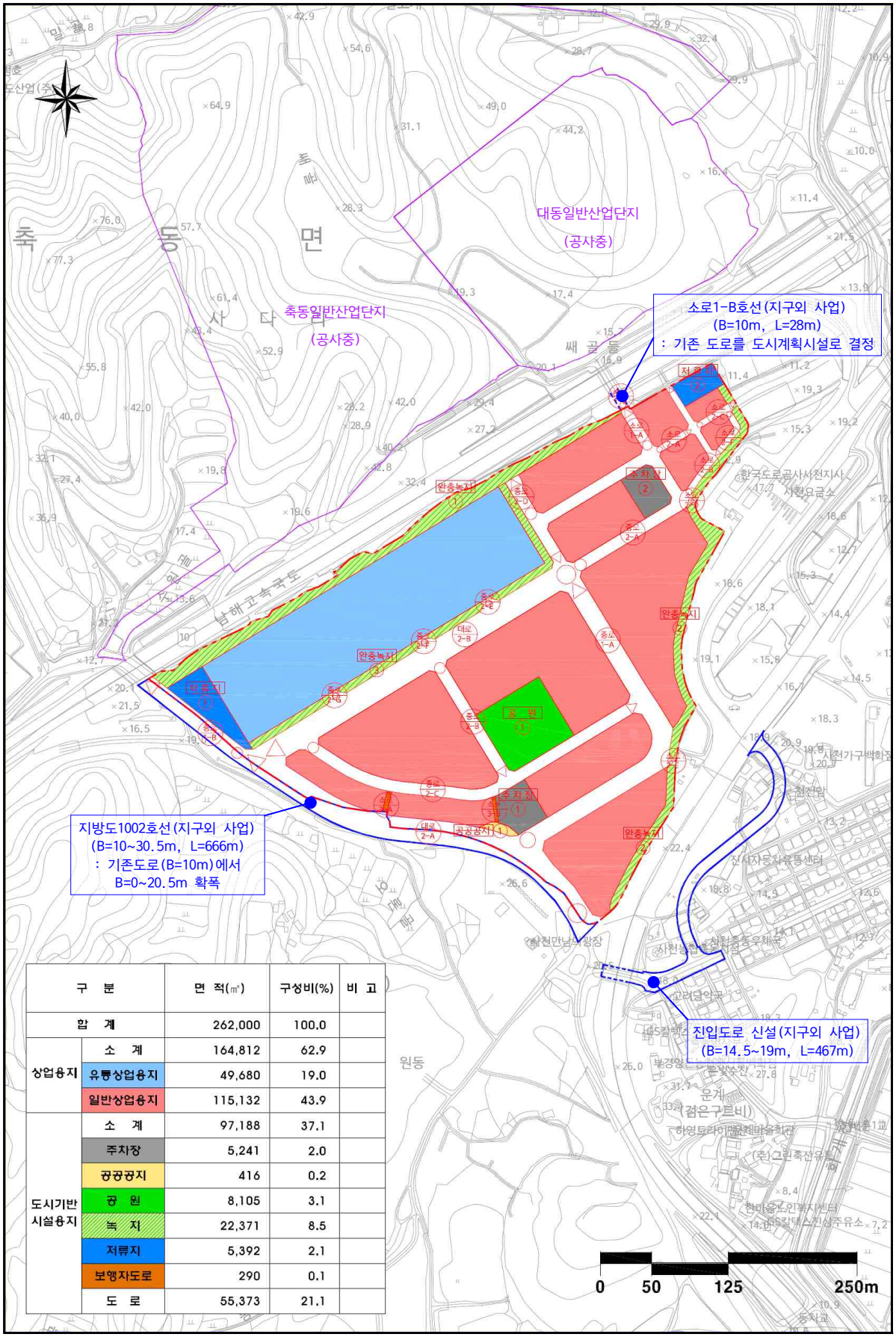

구 분		면 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합 계		262,000	100.0	
상업용지	소 계	164,812	62.9	
	유통상업용지	49,680	19.0	
	일반상업용지	115,132	43.9	
도시기반시설용지	소 계	97,188	37.1	
	주차장	5,241	2.0	
	공공공지	416	0.2	
	공 원	8,105	3.1	
	녹 지	22,371	8.5	
	저류지	5,392	2.1	
	보행자도로	290	0.1	
	도 로	55,373	21.1	

<그림 1.2.2-2> 토지이용계획도

제2장 대상지역 설정

제2장 대상지역 설정

○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, 항목별 평가시기를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(<표 2-1> 참조).

<표 2-1>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범위설정 및 사유

구분	항 목	대상지역 설정사유	대상지역	비 고
자연·생태환경	동·식물상	○사업시행으로 인해 동·식물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	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○공사시 ○운영시
	자연환경자산	○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	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○공사시 ○운영시
대기환경	기 상	○사업지구를 포함한 주변의 기상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지역	○사업지구 ○사천시	○공사시 ○운영시
	대 기 질	○공사장비 가동 및 토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확산예측 범위 내 ○운영시 연료사용 및 차량통행 등에 따른 오염물질 확산예측 범위 내	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(반경 2km) 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(반경 2km)	○공사시 ○운영시
	온실가스	○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	○사업지구	○공사시 ○운영시
수환경	수 질	○공사시 부지정지로 인하여 강우시 토사유입이 예상되는 수계 ○운영시 오수발생, 불투성지역의 증가에 따른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	○사업지구 및 인근수계 ○사업지구 및 인근수계	○공사시 ○운영시
	수리·수문	○사업시행에 따른 유출량 변화 예상지역	○사업지구 및 인근수계	○공사시 ○운영시
토지환경	토지이용	○사업시행에 따라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지역	○사업지구	○공사시 ○운영시

<계 속>

<표 2-1> 계 속

구분	항 목	대상지역 설정사유	대상지역	비 고
토지 환경	토 양	○공사시 공사장비,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해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○운영시 차량통행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	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○공사시 ○운영시
	지형·지질	○공사시 절·성토에 따른 지형형상 및 지질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	○사업지구	○공사시
생활 환경	친환경적 자원순환	○공사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○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	○사업지구 ○사업지구	○공사시 ○운영시
	소음·진동	○공사시 작업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○운영시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영향이 예상되는 지역	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(반경 500m) 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(반경 500m)	○공사시 ○운영시
	경 관	○사업시행으로 인해 경관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	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○운영시
사회·경제 환경	인구·주거	○ 상업시설 계획에 따른 인구 변화 검토	○사업지구	○운영시

○ 본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과 인근수계(하천 등)로 설정하였으며, 이를 <표 2-2> 및 <그림 2-1>에 나타내었음.

<표 2-2>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설정

구 분	항 목	비 고
사업지구	온실가스, 토지이용, 토양, 지형·지질, 친환경적 자원순환, 인구·주거	-
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동·식물상, 자연환경자산, 기상, 대기질, 소음·진동, 경관	-
사업지구 인근수계	수질, 수리·수문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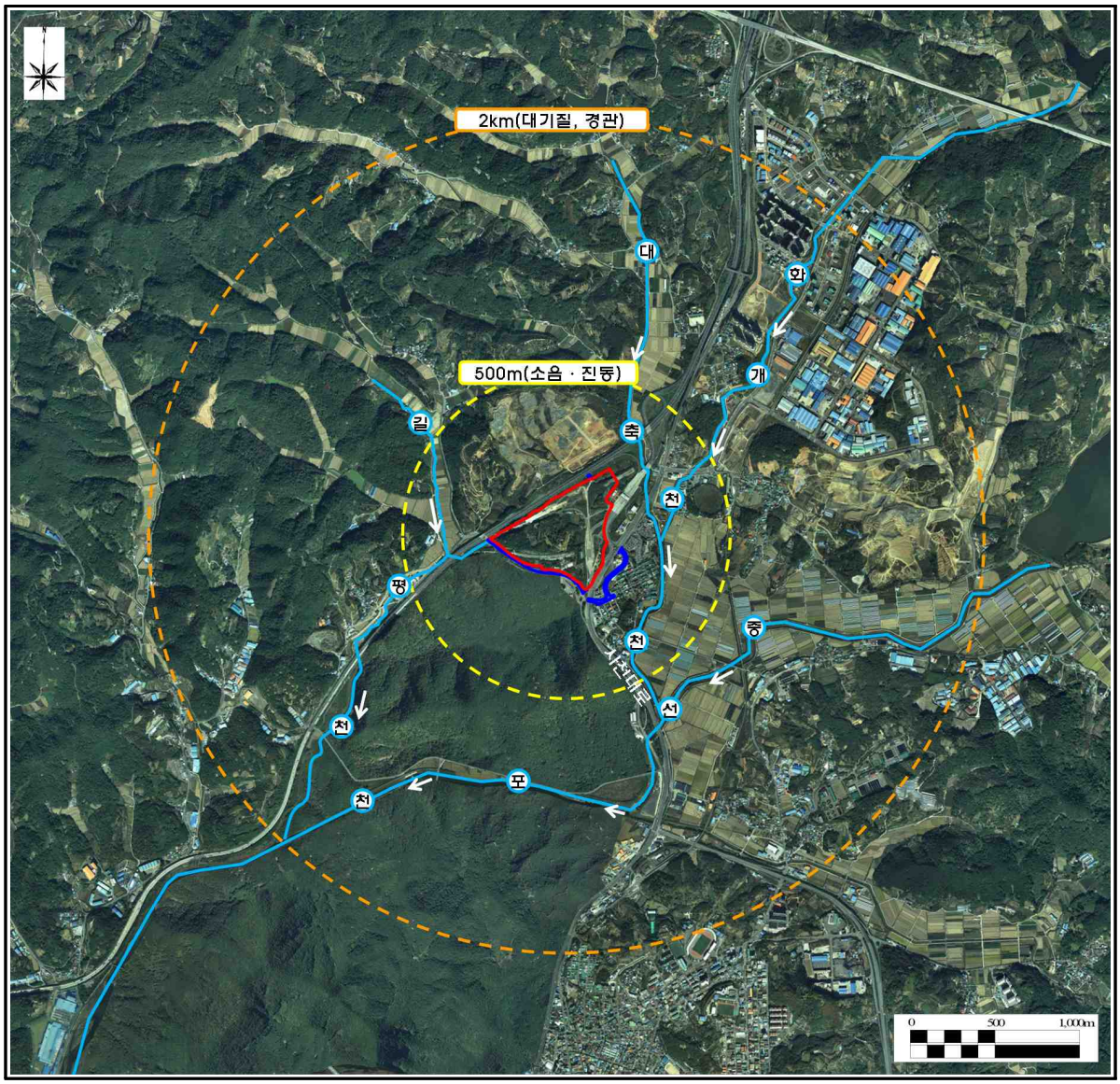

<그림 2-1> 평가대상지역 설정도

제3장 평가항목·범위·방법의 설정

제3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

○ 사업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4개 항목을 중점검토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, 지역특성 파악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1개 항목을 일반조사항목으로 나머지 5개 항목은 미포함 항목으로 선정하였다.

○ 평가항목 선정 사유는 <표 3-1>과 같다.

<표 3-1> 환경영향평가항목 선정 사유

구 분	평가항목	선정 사유
중점 검토항목 (12개)	동·식물상	○사업시행으로 인한 식물상, 식생 및 동물상의 변화
	자연환경자산	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자산 훼손여부 파악
	대 기 질	○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공사장비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○운영시 연료사용 및 차량통행 등에 따른 오염물질 증가
	온실가스	○공사시 장비투입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○운영시 연료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
	수 질	○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수계의 수질 영향 ○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○운영시 오수발생, 비점오염원 처리
	수리·수문	○우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변화
	토지이용	○사업시행전·후의 토지이용 변화
	토 양	○공사시 장비가동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 ○운영시 차량통행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
	지형·지질	○절·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○공사로 인한 사면발생 및 토사유출 영향
	친환경적 자원순환	○공사시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○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 발생 ○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
	소음·진동	○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·진동 영향 ○운영시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영향

<표 3-1> 계 속

구 분	평가항목	선정 사유
중점 검토항목 (12개)	경 관	○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발생
일반 조사항목 (2개)	기 상	○생활환경 항목의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
	인구 · 주거	○생활환경 항목의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
미포함 항목 (6개)	악 취	○사업시행과 연관 없음
	해양환경	○사업시행과 연관 없음
	위생 · 공중보건	○사업시행과 연관 없음
	전파장해	○사업시행과 연관 없음
	일조장해	○사업시행과 연관 없음
	산 업	○사업시행과 연관 없음

제4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제4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▸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은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11조제5항, 제24조제7항,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등의 공개, 초안의 공고·공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

<표 4-1>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(환경영향평가법)

구 분		내 용	비 고
환경 영향평가 평가준비서	결 정 내 용 공 개	○ 공개방법 - 사천시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,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14일 이상 ○ 공개내용 -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	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
환경 영향평가서 (약식평가)	공 고 · 공 람	○ 공고방법 - 일간신문, 지역신문 각각 1회 ○ 공람기간 및 장소 - 사천시와 협의 후 결정 (20일 이상 60일 이내) ○ 공고내용 - 사업의 개요 - 평가서에 대한 공람기간 및 장소 - 평가서에 대한 의견(공청회 개최여부)의 제출시기 및 방법	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
	게 시	○ 게시방법 - 사천시 홈페이지 : 공고 및 공람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요약문 -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: 공고 및 공람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	공고 및 공람 실시 후
	설명회	○ 방 법 - 공람기간 내 실시 ○ 장 소 - 사천시와 협의 후 결정	-
	공청회	○ 평가서에 대한 의견제출에 따른 주민요구시 별도 개최 - 공청회요청 30명 이상 - 공청회요청 5명 이상이고 의견제출 주민 총수의 50% 이상	-
	의 견 반 영 공 개	○ 평가서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와 반영 여부 공개 - 사천시 또는 경상남도홈페이지,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14일 이상(사업계획 확정 이전)	-

제5장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심의내용

제5장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심의내용

5.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개요

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8조,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시행하였음.

5.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

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8조,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, 선정된 평가항목 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토록 함.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

(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도시개발사업)

□ 총 괄 의 견

○ 본 사업은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일원에 복합유통상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와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감대책을 수립·이행하여야 함

□ 심 의 의 견

1.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

○ 대상지역 주변의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과의 환경 영향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영향범위가 중첩되는 지역에 대한 누적 영향평가가 필요함

2. 환경보전방안의 대안

○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대안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, 특히 채택된 대안은 공사시 뿐만 아니라 운영시의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함

3. 평가항목 및 범위 ·방법 등

○ 평가항목 및 방법 등에는 별도의 이견 없음

○ 다만, 지구 외 사업인 진입도로가 기존 마을과 연접하여 신설됨에 따라 공사시 뿐만 아니라 운영시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대기질, 소음·진동 등 영향을 예측·평가하여야 함

4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○ 별도의 이견 없으나, 추후 주민 설명회 시 사업계획, 환경영향 예측 결과 및 저감 방안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등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

5.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

○ 양식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 없음

6. 기타(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)

○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

2018. 7. .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

(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도시개발사업)

□ 총 괄 의 견

○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오염 피해 저감대책은 물론 민원 발생 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가적인 적정 저감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

□ 심 의 의 견

1.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

○ 의견 없음

2. 환경보전방안의 대안

○ 다수의 대안을 도출하여 환경상 최적의 대안을 비교·분석하고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

3. 평가항목 및 범위 · 방법 등

○ 의견 없음

4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○ 법상 정하여진 의견수렴 절차 외에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당해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피해보상대책 및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.

5.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

○ 해당 없음

6. 기타(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)

○ 협의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·시행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.

2018. . .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의견서

[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도시개발사업]

□ 사업 개요

○ 위　　치 :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87번지 일원

○ 사업규모 / 사업기간 : 262,000㎡ / 2016년 ~ 2019년

○ 승인기관 / 사업시행자 : 경상남도 / 사천아이씨도시개발 주식회사

○ 협의근거 :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별표 3 가목제1호 도시개발사업(25만㎡ 이상)

□ 총괄 의견

○ 본 개발사업은 사천IC 인근에 복합유통상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* 및 아래 심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함.

*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반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

□ 심의 의견

1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

○ 사업지역 주변에서 계획 또는 공사·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개발사업의 현황을 조사하여 영향범위가 중첩되는 지역은 누적영향을 평가하여야 함.

○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사유 및 환경영향의 예측·분석에 사용할 기법, 내용 등의 선정사유와 그 타당성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함.

2. 환경보전방안의 대안

○ 항목별 저감방안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각 대안의 장·단점을 비교·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함.

- 저감방안은 현재의 기술적·경제적 수준에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
- 공사시뿐만 아니라 운영시 환경영향까지 고려하여 대안을 설정·분석

3. 평가항목·범위·방법 등

○ 동·식물상

- 동·식물상 조사는 계절특성을 반영하여 출현,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시기, 조사 횟수, 범위 등을 선정하여야 함.
  · 사업지역 우수유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하류수계의 육수생물상을 조사하고 공사 시 및 운영 시 점·비점오염물질로 인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
- 사업지역 내 임야가 약 41%를 차지하고 생태·자연도 2등급 지역이 분포(약 6%)하고 있는바, 임상이 양호한 수목을 조사하여 보전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.

※「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)」 별표 2 '4. 자연생태환경 조사 가이드라인' 참고

○ 대기질(악취) 및 소음·진동

- 사업지역 내 정온시설(주거시설, 종합병원 등) 계획이 있을 경우, 주변에 계획·공사·운영 중인 다수의 산업단지와 사업지역 내부(화물차량 등) 및 외부(남해고속도로, 국도3호선) 도로교통에 의한 대기질(악취) 및 소음·진동 영향을 예측·평가하여야 함.
- 진입도로 신설(지구외 사업) 구간이 주거단지를 통과할 계획인바, 사업지역 내 유통상업시설 등을 이용하는 차량의 이동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대기질, 소음·진동 등 영향을 예측·평가하여야 함.

○ 수질

- 사업지역에서 발생가능한 오염물질(공사 시 토사유출 및 오수처리수, 운영 시 비점오염물질)에 의한 하류 수계 영향을 발생량, 발생농도, 수계유입 후 혼합농도 등을 통해 정량적으로 예측·평가하여야 함.

○ 토지이용

- 유통상업용지 및 일반상업용지의 각 블록별로 들어설 건축물(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포함) 및 업종의 종류·배치 계획 및 이들 각 시설물의 계획이유, 필요성,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.

○ 경관

- 건축물 계획(배치, 간격, 층고·층수, 색채 등)을 제시하고,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, 통경축 확보, 스카이라인 훼손 등 여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함.

· 토지이용계획 또는 건축물 층고 및 배치 조정 등의 다양한 대안을 검토·마련하고, 각각의 대안에 대한 경관영향분석(시뮬레이션) 실시

-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개발 전·후의 경관변화를 명확히 비교·예측하고 저감방안을 검토·수립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.

4.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

○ 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,

○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약식평가서는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적정하게 공고·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의 참여 유도 및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함.

- '알기 쉬운 평가요약서'(http://www.eiass.go.kr/-국민참여-공지사항 참고)를 작성·비치하여 주민참여 확대를 도모

5. 약식평가 절차 대상사업 해당여부

○ 약식절차 진행에 대한 별도의견 없음.

6. 기타

○ 사천공항에 의한 고도제한 등 입지제한 관련 저촉여부를 확인·제시하여야 함.

○ 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시 조사지점은 사업 전·중·후 환경영향 예측 및 비교를 위해 가급적 현황 조사지점과 연계되도록 선정하여야 함.

○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의 반영결과를 표로 작성 시 단순히 '검토하였음', '반영하였음'으로 표기하는 대신에 해당 반영결과를 알기 쉽게 요약·제시하여야 함(본문에 반영 페이지 함께 표기).

-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와 달리진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비교·제시(사유 포함)

○ 환경영향평가서는「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)」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.

2018. 7. 30.

심의위원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
(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도시개발사업)

□ 총 괄 의 견

○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및 운영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
□ 심 의 의 견

1.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

○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은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정온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

2. 환경보전방안의 대안

○ 평가항목별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영향예측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

3. 평가항목 및 범위 · 방법 등

○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을 설정하였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

4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○ 관련법령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제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

5.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

○ 계획의 규모 및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약식절차 진행은 적절하다고 판단됨

6. 기타(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)

○ 사업 시행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여야 함

2018. 7. .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

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

과 업 명	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도시개발사업

구 분	검 토 의 견
검토의견	□ 총괄의견 - 사업대상지는 고속도로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산림이 분포하고 있어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영향이 예상되므로 상세한 경관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경관영향이 예상될 경우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- 의견 없음 2. 토지이용계획 대안 - 시설물 층고를 고려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. 환경영향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 ◎ 대기질·악취 - 사업부지 주변 악취 유발시설 분포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악취 영향 저감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◎ 생태계다양성·서식지 보전 - 사업부지 내부 공원녹지는 초지가 아닌 식생보전IV등급 생태숲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◎ 경관·주거 - 시설물 층고를 고려하여 배후 산지 경관영향 및 도로에서의 경관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경관영향이 예상될 경우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4. 약식평가 절차 신청여부 -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영향이 예상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약식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- 의견 없음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소속 환경정책·평가연구원

2018. 7. 18.

성명 (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
(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도시개발사업)

□ 총 괄 의 견

○ 도시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적정하게 작성됨

□ 심 의 의 견

1.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

○ 평가대상지역을 평가항목별로 적정하게 설정함

2. 환경보전방안의 대안

○ 토지이용계획안을 적정하게 설정하고 도시계획 시설배치도 적정함

3. 평가항목 및 범위·방법 등

○ 평가 항목 및 범위가 적정하게 제시되었으나

○ 평가항목별 조사 횟수 및 시기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

4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○ 법률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으로 적정하게 제시됨

5.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

○ 최소 규모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약식평가 신청이 타당함

6. 기타(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)

○

2018. 7. 17.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

(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도시개발사업)

□ 총 괄 의 견

○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LID적용으로 친환경적 도시개발사업의 방향 설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

□ 심 의 의 견

1.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

○ 적정

2. 환경보전방안의 대안

○ 적정

3. 평가항목 및 범위 ·방법 등

○ 적정

4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○ 필요

5.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

○ 가능

6. 기타(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)

○

2018. 7 . 19 .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

(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도시개발사업)

□ 총 괄 의 견

○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을 반영함으로써 사업수행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

□ 심 의 의 견

1.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

○ 전반적으로 항목별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

○ 평가항목별 예측기법 및 방법(표 2.2-1)에서 온실가스의 경우에 연료사용량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토지이용의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저장 및 흡수량의 변화, 발생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다양한 배출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대책과 저감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

2. 환경보전방안의 대안

○ 환경보전방안의 대안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업시행시의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비교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

3. 평가항목 및 범위 ·방법 등

○ 환경영향평가항목 선정(p.54)에서 온실가스 항목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장비투입 및 연료사용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시켜 평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저감방안이 고려되어야 함

○ 5.3 항목별 평가범위의 설정에서 토양분야의 조사지점이 사업지구내 1개 지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평가내용인 공사시 및 운영시의 영향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사업지구 바깥의 측정지점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소음·진동 측정지점 NV-1과 NV-2는 도로변에 접하고 있으므로 도로소음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지구내에 측정지점을 추가하여 공사시 및 운영시의 소음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

4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○ 특이사항 없음

5.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

○ 특이사항 없음

6. 기타(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)

○ 제 8장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에서 모든 협의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본문에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듦.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되,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은 명확하게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다음 단계에 필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. 이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의견들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

2018. 7. 27.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

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
❑총 괄 의 견

0공사시 주변 마을에 먼지등에 의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공사를 해야함

❑심 의 의견

1, 환경영향 평가 대상지역 설정

0 적정합니다

2, 환경보전 방안의 대안

0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

3, 평가항목 및 범위,방법등

0 적정합니다

4, 주민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0 적정합니다

5, 약식평가 신청 가능 여부

0 적정합니다

6, 기타 (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사항 결정시 고려 사항등을 참고)

0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

0 민원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

0 특히 오폐수 흐름을 예하천 방향으로 흐르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함

❑ 행정 사항 (승인기관, 사업자

2018년 7월 일

환 경 영 향 평 가 협의회 위원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

(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도시개발사업)

□ 총 괄 의 견

○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와 항목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

□ 심 의 의 견

1.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

○ 적절함

2. 환경보전방안의 대안

○ 적절함

3. 평가항목 및 범위 · 방법 등

○ 적절함

4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○ 적절함

5.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

○ 판단보류함

6. 기타(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)

○ 없음

2018. . .

환경영향평가협의